

***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정량지표:**

- 최근 1년간 지역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전국 감소율 간 차이
- 최근 1년간 업종별 평균 피보험자수의 1년·3년전 대비 감소율
- 최근 1년간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의 전년대비 감소율

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은 ▶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▶ 러시아 -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**경영상황이 악화**되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'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다.

또한,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**고용상황이 악화**되고 있다.

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.31% 이상 감소* 하였으며,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.3%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.

* '21.11월~'22.10월 기초자치단체 피보험자수의 이전 12개월 대비 감소율 순위:
1위 - 동대문구 (-6.81%), 2위 - 거제 (-5.31%), 3위 - 구례 (-1.84%) / 전국: +3.29%

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(-1.95%)도 기초자치단체(시) 중 3번째로 높아, 지역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.

심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·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의결하였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>

고용위기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연장)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. **<붙임2: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>**

사업주는 유급휴업·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,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,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▲ (고용유지지원금) 유급 휴업·휴직수당의 2/3→90%, 1일 6.6만원→7만원
- ▲ (보험료 혜택) 고용보험·산재보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/ 고용보험·산재보험·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 집행유예
- ▲ (사업주 직업훈련) 지원 한도 상향(240%→300%)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(100→150%)

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,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- ▲ (생활안정자금) 상환기간: 최대 5년 → 8년, 한도액: 자녀학자금 5백만원 → 7백만원 등
- ▲ (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) 최대 1천만원 → 2천만원
- ▲ (국민내일배움카드) 훈련비 지원액 인상(300→400만원) 및 자부담률 인하(15~55%→0~20%)

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·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.

※ (붙임1)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

(붙임2) 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

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

<시외버스>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(고속버스 포함)

<외국인전용카지노>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
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

<택시운송업>

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(개인택시 업체 제외) 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·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

□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

구분		일반	특별고용지원업종
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·휴직)	지원한도	1일 6.6만원	1일 7만원 (대규모기업 6.6만원)
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: 휴업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	우선지원대상기업: 휴업수당의 90% (대규모기업 2/3~3/4)
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업·휴직)	지원한도	- 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	-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,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
	지원요건	- 무급휴직 실시(30일)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3개월)	- 무급휴직 실시(30일)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1개월)
직업훈련	사 업 주 훈련지원	지 원 한 도 남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 훈련비 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남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 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 배움카드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연장 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	생 계 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1명당 2천만원
	고용·산재보험료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 (1인당 3만원)	면제
국민취업지원제도II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
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용자	소득요건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3년 월 207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3년 월 296만원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3년 월 253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3년 월 361만원)
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자녀학자금 한도액	1명당 연 5백만원	1명당 연 7백만원
	자녀학자금 대상자	고등학생 자녀	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도액	1천만원	2천만원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		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(최대 12개월) 지원	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
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	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

□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

구분		일반		고용위기지역
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·휴직)	지원한도	1일 6.6만원		1일 7만원 (대규모기업 6.6만원)
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: 휴업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		우선지원대상기업: 휴업수당의 90% (대규모기업 2/3~3/4)
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업·휴직)	지원요건	- 무급휴직 실시(30일)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3개월)		- 무급휴직 실시(30일)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1개월)
직업훈련	사 업 주 훈련지원	지 원 한 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 원 단 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, 1,000인 미만 60%,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, 1,000인 미만 100%,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 배움카드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연장 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
	생 계 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2천만원
고용·산재보험료	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고용보험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 (1인당 3만원)		면제
국민취업지원제도Ⅱ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	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
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용자	소득요건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3년 월 207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3년 월 296만원)	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3년 월 253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3년 월 361만원)
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자녀학자금 한도액	1명당 연 5백만원		1명당 연 7백만원
	자녀학자금 대상자	고등학생 자녀		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도액	1천만원		2천만원
지역고용촉진지원금		-		1년간 월임금 50%(대규모기업 1/3) 지원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		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(최대 12개월) 지원		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
고용촉진장려금		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		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
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	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